

목 차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서대문구청장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8년 4월 19일 ~ 5월 18일(3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장 숙 이 (서대문구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장 원 석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윤 내 원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김 주 일 (교 수)
 - 검 사 위 원 : 신 현 승 (세 무 사)

결산검사 의견서	1
I. 결산검사 경과	2
II. 결산검사 결과 총평	
1. 서대문구 재정의 개황	3
2. 세입·세출 결산	5
3. 기금의 결산	17
4. 재무제표의 결산	19
5. 성과보고서	54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58
III. 개선 및 권고사항	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2018년 5월 1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4월 19일부터 2018년 5월 18일까지(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서대문구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서대문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단,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내용상 개선권고 사항의 의견을 제시하니, 다음 회계연도 예산 운영과 결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장 숙 이
위 원	장 원 석
위 원	윤 내 원
위 원	김 주 일
위 원	신 현 승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8. 4. 19. ~ 5. 18.(3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장 숙 이	세입·세출결산 및 결산 첨부서류 심사	
위 원	장 원 석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윤 내 원	결산개요 및 재정현황, 세입·세출결산 등 심사	
	김 주 일	성과보고서, 세입·세출결산 등 심사	
	신 현 승	재무제표, 기금결산, 금고결산 등 심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 고
구의회사무국	2018. 4. 19.	· 계산의 과오여부 및 부합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 부합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심사 · 성인지결산서 등 결산서 첨부 서류 심사 · 위원 토의 및 의견서 작성	
담 당 관	2018. 4. 19. ~ 4. 22.		
주 민 자 치 국	2018. 4. 23. ~ 4. 24.		
경 제 재 정 국	2018. 4. 25. ~ 4. 29.		
북 지 문 화 국	2018. 4. 30. ~ 5. 2.		
환 경 도 시 국	2018. 5. 3. ~ 5. 8.		
안전건설교통국	2018. 5. 9. ~ 5. 13.		
보 건 소	2018. 5. 14. ~ 5. 15.		
의견서 작성	2018. 5. 16. ~ 5. 18.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 위원 간 토의

II. 결산검사 결과 총평

1. 서대문구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회계	세입	339,616,094	358,334,903	410,057,056	491,043,881	566,362,273
	세출	304,194,533	321,099,895	347,927,717	388,644,223	461,619,950
	결산상잉여금	35,421,561	37,235,008	62,129,339	102,399,658	104,742,323
특별회계	세입	15,526,632	17,632,308	19,597,653	25,571,860	25,404,056
	세출	5,485,836	5,659,396	5,855,274	10,539,380	6,707,960
	결산상잉여금	10,040,796	11,972,912	13,742,389	15,032,480	18,696,096
기금	수입	15,335,558	16,135,073	16,976,657	17,416,091	40,601,798
	지출	15,335,558	16,135,073	16,976,657	17,391,651	40,568,808
	결산상잉여금	0	0	0	24,440	32,990
총계	세입(수입)	370,478,284	392,102,284	446,631,366	534,031,832	632,368,127
	세출(지출)	325,015,927	342,894,364	370,759,648	416,575,254	508,896,718
	결산상잉여금	45,462,357	49,207,920	75,871,718	117,456,578	123,471,409

2017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세입 18.4%, 세출 22.2%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5년 평균 10% 이상(세입 13.6%, 세출 10.9%)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기금은 2017년 신규 조성액에 의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 연도에 1,475,767원으로, 전년 대비 238,811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2017	1,784,275	29,468	1,754,807	412,367	468,605	(56,238)	
2016	1,739,751	34,091	1,705,660	379,508	429,323	(49,815)	
증감	44,524	(4,623)	49,147	32,859	39,282	(6,423)	

순자산이 전년 대비 49,147백만원(2.9%)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6,423백만원(12.9%)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서대문구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08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해 갚아야 할 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 = A - B)
합 계	566,138,679	591,766,329	468,327,910	123,438,419
일 반 회 계	541,634,820	566,362,273	461,619,950	104,742,323
특 별 회 계	24,503,859	25,404,056	6,707,960	18,696,096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0	26,770,397	21,607,866		6,244,465	68,815,691
일 반 회 계	0	25,440,397	18,835,916		6,231,494	54,234,516
특 별 회 계	0	1,330,000	2,771,950		12,971	14,581,175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91,766,329천원으로 예산액 566,138,679천원보다 25,627,650천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9.1%인 468,327,910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3,438,419천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26,770,397천원, 사고이월비 21,607,866천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6,244,465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8,815,691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123,438,419천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액	541,634,820	593,499,968	566,362,273	1,164,705	25,972,990
결산확인액	541,634,820	593,499,968	566,362,273	1,164,705	25,972,990
차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566,362,273천원은 예산현액의 104.5%로서 24,727,453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상승, 북아현 재개발구역 분양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서울시 보통세 채원규모 증가에 따른 자치구조정교부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 수납액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세입결산액과 부합되었습니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66,362,273,044	566,362,273,044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액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징수 결정액 대비 결손 처분액
2017	541,634,820	593,499,968	566,362,273	1,164,705	109.6	95.4	0.2
2016	469,693,424	519,200,523	491,043,881	909,320	110.5	94.6	0.2
증감	71,941,396	74,299,445	75,318,392	255,385	△0.8	0.8	0.0

수납액은 전년도 491,043,881천원보다 75,318,392천원이 많은 566,362,273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909,320천원보다 255,385천원이 증가한 1,164,705천원이고,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는 시효소멸 703,268천원, 무재산 274,394천원, 평가액 부족 159,844천원, 행방불명 14,559천원 등입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세입 과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541,634,820	593,499,968	566,362,273	1,164,705	25,972,990
지방세	소계	67,693,721	72,911,419	71,512,147	460,540	938,732
	등록면허세	8,470,721	7,739,381	7,698,098	39,820	1,463
	재산세	58,853,000	63,712,752	63,264,859	144,140	303,753
	지난년도수입	370,000	1,459,286	549,190	276,580	633,516
세외수입	소계	39,063,463	71,488,725	45,750,301	704,165	25,034,258
	국유재산임대료	20,760	20,760	20,760	0	0
	공유재산임대료	471,164	1,341,063	1,326,245	0	14,818
	도로사용료	1,883,030	1,936,128	1,872,275	0	63,853
	하천사용료	15,000	16,443	14,125	0	2,318
	입장료수입	1,486,000	1,756,229	1,756,229	0	0

세입 과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2,826,940	2,792,822	2,768,122	0	24,700
	증지수입	720,690	709,176	709,176	0	0
	쓰레기처리비용투판매수입	6,610,000	6,516,498	6,516,498	0	0
	기타수수료	247,295	266,228	266,228	0	0
	주차요금수입	387,632	418,035	418,035	0	0
	의료사업수입	269,310	285,800	285,800	0	0
	기타사업수입	267,500	171,603	171,603	0	0
	징수교부금수입	8,647,893	10,867,462	10,867,462	0	0
	공공예금이자수입	1,110,000	2,167,872	2,167,872	0	0
	기타이자수입	3,000	10,611	10,611	0	0
	시·도유재산매각취속수입금	702,756	1,450,149	1,445,312	0	4,837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074,000	6,238,098	6,228,186	0	9,912
	자치단체간부담금	362,135	362,135	362,135	0	0
	일반부담금	30,000	220,172	220,172	0	0
	과징금	120,340	205,317	126,565	0	78,752
	이행강제금	1,256,453	3,899,427	1,701,325	0	2,198,102
	변상금	549,500	1,091,722	806,350	0	285,372
	위약금	0	10,126	10,126	0	0
	과태료	521,113	1,361,195	705,900	0	655,295
	불용품매각대	40,000	96,675	96,675	0	0
그외수입	1,180,555	1,724,063	1,544,566	0	179,497	
지난년도수입	3,260,397	25,552,915	3,331,948	704,165	21,516,802	
지방교부세		10,489,500	12,499,843	12,499,843	0	0
조정교부금등		127,970,164	143,521,165	143,521,165	0	0
보조금		193,365,561	190,061,610	190,061,61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3,052,411	103,017,207	103,017,207	0	0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2.6%인 71,512,147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5,750,30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99,843천원, 조정교부금등은 전체 세입의 25.3%인 143,521,165천원, 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33.6%인 190,061,610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산액	505,080,118	541,634,820	461,619,950	44,276,313	35,738,557
결산확인액	505,080,118	541,634,820	461,619,950	44,276,313	35,738,557
차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505,080,118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6,554,70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41,634,820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6%인 294,186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실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이체는 예산액의 0.2%인 770,000천원으로서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이관에 기인합니다.

예비비사용액은 1,175,587천원으로서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2%에 해당하는 461,619,950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4,276,313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사이월액은 25,440,397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8,835,916천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 지역활성화과 신촌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연 등에 기인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6%에 해당되는 35,738,557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 세출결산액

세출결산액은 구금고 2017년도 총수입 및 지출증명상의 세출결산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461,619,949,856	461,619,949,856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6 회계연도 지출액	2017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금액	비율
합 계	388,644,223	541,634,820	461,619,950	85.2	72,975,727	18.8
일반공공행정	36,375,893	78,077,237	64,749,248	82.9	28,373,355	78.0
공공질서및안전	1,329,756	1,480,056	1,293,587	87.4	△36,169	△2.7
교육	11,420,396	9,843,019	8,819,794	89.6	△2,600,602	△22.8
문화및관광	13,175,593	24,756,844	20,266,379	81.9	7,090,786	53.8
환경보호	21,468,894	31,080,840	26,021,230	83.7	4,552,336	21.2
사회복지	178,210,654	219,556,658	197,605,579	90.0	19,394,925	10.9
보건	10,417,103	13,403,531	11,876,855	88.6	1,459,752	14.0
농림해양수산	1,107,549	1,850,150	1,475,648	79.8	368,099	33.2
산업·중소기업	7,940,788	21,971,217	10,791,518	49.1	2,850,730	35.9
수송및교통	7,634,557	13,702,337	9,361,947	68.3	1,727,390	22.6
국토및지역개발	5,303,733	12,378,690	7,116,155	57.5	1,812,422	34.2
예비비	0	3,554,908	0	0.0	0	0.0
기타	94,259,307	109,979,333	102,242,010	93.0	7,982,703	8.5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197,605,579천원, 기타 102,242,010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일반공공행정 28,373,355천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문화 및 관광으로 전년대비 53.8%가 증가하였습니다.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특별회계 합계	24,503,859	33,967,779	25,404,056	380,336	8,183,387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29,713	1,810,515	1,810,51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4,104	659,559	514,191		145,368
주차장특별회계	22,210,042	31,497,705	23,079,350	380,336	8,038,019
결산확인액	24,503,859	33,967,779	25,404,056	380,336	8,183,387
차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25,404,056천원은 예산현액의 103.7%로서 900,197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비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74.8%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8%가 높아졌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80,336천원으로서 이는 납부의무자의 무재산에 기인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24.1%인 8,183,387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세대만에 기인한 것입니다.

○ 세입결산액

세입결산액은 구금고 2017년도 총수입 및 지출증명상의 세입결산액과 부합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5,404,056,492	25,404,056,492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특별회계 합계	22,881,740	24,503,859	6,707,960	4,101,950	13,693,949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29,713	1,729,713	438,080	0	1,291,63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4,104	564,104	480,718	0	83,386
주차장특별회계	20,587,923	22,210,042	5,789,162	4,101,950	12,318,930
결산확인액	22,881,740	24,503,859	6,707,960	4,101,950	13,693,949
차액	0	0	0	0	0

○ 세출결산액

세출결산액은 구금고 2017년도 총수입 및 지출증명상의 세출결산액과 부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707,960,140	6,707,960,140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22,881,740천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1,622,11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4,503,859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예비비의 사용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7.4%에 해당하는 6,707,960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101,950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330,000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771,950천원이었으며 유희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 지연에 기인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9%에 해당되는 13,693,949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천원)

회계구분	사업내역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비고
합 계		26,770,397	21,607,866	
일반회계	계	25,440,397	18,835,916	
	기록물관리	0	24,145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	3,361,019	146,460	
	동청사 개보수	0	397,345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	800,000	378,053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632,070	27,800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확보	0	306,956	
	홍제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800,000	0	
	5060일자리 지원사업	344,100	1,362,459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20,000	0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0	7,4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50,000	0	
	관광인프라 구축	0	26,530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123,000	389,229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0	508,278	
	신촌 문화플랫폼 구축 및 운영	35,000	0	
	신촌도시재생사업추진	2,141,520	3,157,714	
	이대 특화거리 조성	164,700	0	
	보훈회관 확장(리모델링)	1,500,000	0	
	발달장애인 감각통합실 설치	0	50,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1,960,685	41,907	
	장애인 복지시설 리모델링	0	372,260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5,000	200,000	
	경로당 운영 지원	0	465,471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70,000	275,750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배 사업	0	14,65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828,514	5,585,733	
	다목적 체육관 건립	0	41,052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0	8,160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265,885	145,561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1,194,000	704,500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33,000	0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1,081,900	0	

회계구분	사업내역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비고
일반회계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0	45,870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17,000	0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0	39,365	
	충정·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0	120,367	
	홍제지구단위계획 구역확대 수립비용역(홍은지구단위계획수립비용역)	0	48,965	
	홍제축진지구 개발	0	19,356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29,000	0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0	8,641	
	재활용품 분리 배출	0	67,000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2,304,218	309,750	
	신촌스테이션물 조성	50,000	9,190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시 주민참여예산)	0	15,000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시주민참여예산)	0	106,974	
	모래대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250,000	0	
	연희동 170-19 ~ 142-2간 도로개설	0	128,490	
	제설기능 유지	0	73,991	
	제설용역	0	126,828	
	토목과 대기실 개선 공사	46,630	0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	0	754,560	
	북기좌동 286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700,000	0	
	연희삼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1,000,000	0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700,000	0	
	공원내 범죄예방용 CCTV설치	0	20,000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1,200,000	0	
	독립공원내 가각 정비사업	245,805	0	
	산림위험시설 정비	224,072	0	
	신촌 도시재생 공원 정비사업(창천근린공원)	8,279	0	
	조경관리 및 운영	0	97,424	
	창의 어린이놀이터 조성	0	12,930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	0	2,099,264	
	정원단지 주차시설 및 도로정비	990,000	26,379	
	청사시설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0	27,69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0	40,467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도시활력)	105,000	0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 특화사업(도시활력)	60,000	0	
주차장 특별회계	유희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1,330,000	2,771,950	

검사결과 명시이월은 26,770,397천원, 사고이월은 21,607,866천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기금의 결산

서대문구의 2017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직전연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조성액	사용액	
계	14,813,047,558	25,788,750,479	3,958,884,333	36,642,913,704
공용청사및시설건립기금 (구의회청사건립계정)	-	9,010,483,320	-	9,010,483,320
공용청사및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건립계정)	-	7,041,645,000	-	7,041,645,000
공용청사및시설건립기금 (교육및문화체육시설건립계정)	-	5,015,416,660	-	5,015,416,660
중소기업육성기금	2,596,709,426	1,503,573,669	1,177,910,000	2,922,373,095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362,692,512	43,427,880	94,643,210	1,311,477,182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538,085,684	9,744,700	11,000,000	536,830,384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517,814,184	9,597,046	24,500,000	502,911,230
성평등기금	1,166,147,352	20,408,090	34,874,470	1,151,680,972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610,127,563	7,420,720	617,548,283	-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기금	1,902,793,650	1,536,993,900	70,000	3,439,717,550
옥외광고정비기금	840,025,314	281,025,264	700,375,540	420,675,038
도로굴착복구기금	1,038,568,823	507,156,350	664,168,930	881,556,243
재난관리기금	3,190,147,632	684,492,120	544,972,900	3,329,666,852
식품진흥기금	1,049,935,418	117,365,760	88,821,000	1,078,480,178

검사결과 서대문구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과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등 3개 기금 총 14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6,642,913,704원이고 직전연도말 조성액은 14,813,047,558원으로 21,829,866,146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으로 21,829,866,146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총 3,958,884,333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조성하고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의 결산

가. 재무제표 검토업무에 대한 검사

지방회계법(2017.7.26.개정시행)에 따른 통합결산서 체계를 반영하여 검사 사항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추가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 확인

가) 검토인

검토인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인에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 보수교육과정 수료증을 징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수료일	등록번호	성명	구분	소속감사인
2017년 12월 9일	12126	방기홍	개업	정명회계법인
2017년 12월 9일	13035	문진목	개업	정명회계법인
2017년 12월 8일	9392	주병욱	개업	정명회계법인

나) 검토인이 수행한 검토업무 수행절차 및 수행결과

(1) 사전준비사항 검토

- 시스템 이월처리 검토
- 기초재수정분개 검토
- 결산조사서식 교육
- 수정전 합계잔액시산표 검토
- 자산변동회계처리의 검토
- 건설중인공사 완공처리의 검토
- 감가상각처리 검토

- 자산차이 검토
- 세입회계처리 검토
- 현금잔액 검토

(2) 본 결산 재무보고서 검토

- 재정자금분류의 검토
- 대손충당금 설정의 검토
- 용자금의 검토
- 재고자산의 검토
- 기간귀속항목의 검토
- 세입세출외현금의 검토
- 학자금위탁대여금의 검토
- 장기투자증권의 검토
- 회원권 및 용익물권의 검토
- 보증금의 검토
- 일반미지급금의 검토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및 장기미지급금의 검토
- 차입금의 검토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검토
- 소송사건의 검토
- 순자산 분류의 검토
- 재정운영표의 검토
-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검토
- 내부거래의 검토
- 주식 및 부속명세서의 검토
- 차이명세서의 검토

2) 검토절차의 적정성 확인

검토인으로부터 징구하여 확인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 검토업무에 대한 확인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귀하

이 확인서는 검토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2017년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예	아니오
검토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검토기준에서 요구하는 검토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검토증거에 대해 문서화를 수행하였습니다.	✓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58
정명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상진
2018년 3월 20일



3) 검토결과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서대문구의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별도의 권고사항 및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4) 검토보고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검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재무제표, 필요한 주석사항 및 필수보충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었으며, 2018년 3월 20일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검토보고서일(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을 준수하였습니다.

5) 중요한 후속사건의 고려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상 자산·부채 또한 출납 폐쇄기간 및 출납 폐쇄기간 내 회계처리의 예외의 경우 1월20일까지 발생한 거래를 반영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의 경우 1월 19일까지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하였습니다.

출납폐쇄기한 이후 발생한 사건 중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된 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금액(원)	사업내용	해당부서
2018-01-02	1,664,490	공원 유지관리	푸른도시과
2018-01-02	20,510,160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	교통관리과
2018-01-02	13,058,13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2	1,874,560	연희로 5개소 노후 및 불량하수관 정비	안전치수과
2018-01-02	12,262,58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안전치수과
2018-01-02	17,129,480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푸른도시과
2018-01-02	82,396,530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안전치수과

일자	금액(원)	사업내용	해당부서
2018-01-02	72,36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2	6,871,30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2	25,341,330	노후 체육시설 개량	푸른도시과
2018-01-02	11,508,730	연희로 5개소 노후 및 불량하수관 정비	안전치수과
2018-01-02	3,839,890	연희로 5개소 노후 및 불량하수관 정비	안전치수과
2018-01-02	9,887,43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행정과
2018-01-02	3,046,360	조경관리 및 운영	푸른도시과
2018-01-02	6,233,89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2	4,775,260	연희로 5개소 노후 및 불량하수관 정비	안전치수과
2018-01-02	1,628,310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시 주민참여예산)	토목과
2018-01-02	761,68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2	16,856,020	조명시설 유지관리	토목과
2018-01-02	5,552,020	노후 체육시설 개량	푸른도시과
2018-01-02	1,357,42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2	2,573,130	조명시설 유지관리	토목과
2018-01-02	24,864,540	연희로 5개소 노후 및 불량하수관 정비	안전치수과
2018-01-02	3,091,48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2	18,097,200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안전치수과
2018-01-02	370,280	도로굴착 복구공사	토목과
2018-01-02	1,831,740	연희로 5개소 노후 및 불량하수관 정비	안전치수과
2018-01-02	7,681,250	도로굴착 복구공사	토목과
2018-01-02	343,840	도로굴착 복구공사	토목과
2018-01-02	754,160	도로굴착 복구공사	토목과
2018-01-02	2,377,330	도로굴착 복구공사	토목과
2018-01-02	5,399,920	도로굴착 복구공사	토목과
2018-01-02	15,727,280	도로굴착 복구공사	토목과
2018-01-02	3,107,860	하수구조물 보수	안전치수과
2018-01-02	28,952,000	도로굴착 복구공사	토목과
2018-01-02	554,980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자치행정과
2018-01-02	7,890,270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치수과
2018-01-02	3,590,520	연희로 5개소 노후 및 불량하수관 정비	안전치수과
2018-01-02	2,555,630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2	3,884,510	도로굴착 복구공사	토목과
2018-01-02	10,957,120	하수구조물 보수	안전치수과
2018-01-02	55,095,920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문화체육과
2018-01-02	49,745,880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문화체육과
2018-01-02	201,020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문화체육과
2018-01-02	97,582,390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교통행정과
2018-01-02	72,427,997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	자치행정과
2018-01-02	156,988,183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	자치행정과
2018-01-02	3,820,490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치수과

일자	금액(원)	사업내용	해당부서
2018-01-02	11,654,14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2	1,372,000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푸른도시과
2018-01-02	2,238,420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	푸른도시과
2018-01-02	1,729,280	경로당 운영 지원	어르신복지과
2018-01-02	2,080,270	청년 스마트메니저 운영	어르신복지과
2018-01-02	11,593,150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활성화과
2018-01-02	17,735,450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지역활성화과
2018-01-02	483,947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지역활성화과
2018-01-02	7,824,943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지역활성화과
2018-01-02	17,403,47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018-01-02	890,11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018-01-02	29,355,018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018-01-02	333,290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	푸른도시과
2018-01-02	5,663,420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과
2018-01-02	3,776,28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018-01-02	144,540,490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지역활성화과
2018-01-02	862,27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018-01-02	1,813,87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018-01-02	14,404,55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018-01-02	12,576,54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018-01-02	13,255,19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018-01-03	1,337,180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주택과
2018-01-03	19,994,610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	복지정책과
2018-01-03	22,121,000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3	3,715,580	수목식재 사후관리	푸른도시과
2018-01-03	55,672,48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3	34,485,22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3	37,823,14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5	42,726,42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5	62,061,330	제설기능 유지	토목과
2018-01-05	34,738,480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토목과
2018-01-05	65,087,580	제설기능 유지	토목과
2018-01-05	51,300,000	대기보전	환경과
2018-01-10	2,226,160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안전치수과
2018-01-10	14,243,290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안전치수과

상기 집행내역은 2017년 진행사업에 대한 일반미지급금 및 일반미지급비용의 반제이며, 상기 지출액 외 나머지 항목은 2017년 예산집행잔액 반납 및 보조금 등 반납입니다.

나. 추가 검증

1) 유의적 변동이 있는 주요계정과목에 대한 검증표

가) 재정상태표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목	일반회계			
	증감률	증감액	기초잔액	기말잔액
미수세금	-21.45	-256,466	1,195,197	938,731
재고자산	197.44	344,526	174,488	519,015
구축물	30.67	804,394	2,622,033	3,426,428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2.31	-119,411	-535,026	-654,43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45.66	-4,529,564	9,919,686	5,390,121
체육시설	344.81	17,034,517	4,940,183	21,974,700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30.48	1,154,539	-3,787,075	-2,632,536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55.76	-3,336,944	5,984,251	2,647,306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20.41	-1,577,572	-7,726,174	-9,303,746
주민편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4.26	-1,864,226	4,211,885	2,347,658
보증금	-90.38	-135,000	149,356	14,356
기타비유동자산	-66.77	-1,856,291	2,780,059	923,768
기타비유동부채	-25.74	-3,301,873	12,826,066	9,524,193
퇴직급여충당부채	-20.69	-2,067,902	9,990,291	7,922,388
기타비유동부채(세목)	-43.51	-1,233,970	2,835,775	1,601,805

(가) 미수세금 : 당해연도 미수세금은 71,831,851,500원 증가하고 72,088,318,170원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결손처분액에 비해 현년도 결손처분이 다소 많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미수세입금 결손내역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명	세목명	결손처분액(단위:원)	결손사유
계		1,164,705,140	
일반회계	지방세 계	460,540,180	▶ 「2017회계연도 결산(안 I)」 616쪽 참조 - 무재산 - 평가액부족 - 행방불명 - 시효소멸 - 기타(납세자번호오류 부족 등) ▶ 관련 법령 -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07조(채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채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등록면허세	77,349,000	
	주민세	1,016,010	
	재산세	382,175,170	
	세외수입 계	704,164,960	
	도로사용료	25,734,310	
	기타사용료	399,920	
	과징금및 이행강제금	234,918,740	
	변상금및위약금	2,723,180	
	과태료	438,076,470	
그외수입	2,312,340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계	380,335,760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채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과태료	380,335,760	
육외광고정비기금	세외수입 계	18,956,700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채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과징금및 이행강제금	-	
	과태료	18,956,700	

(나) 재고자산 : 저장품은 47,454,500원 감소(기초재수정분개), 412,147,517원 증가(기말수정분개)하였으며, 판매용물품은 600,048,788원 감소(처분), 579,882,530원 증가(매입)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종류	자산명	금액	관리부서
저장품	엽화칼슘	54,180,000	토목과
	제설용소금	25,818,121	
	친환경제설제	318,237,396	행정지원과
	쓰레기봉투	1,012,000	청소행정과
공공용쓰레기봉투	12,900,000		
판매용물품	종량제봉투	106,867,585	

(다) 구축물 : 2017년 CCTV 통합구매설치사업, 다목적체육관 태양광발전 장치 구매 등 804,394,330원 증가하였습니다.

(라)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구의회 신축관련 공사비 등으로 983,860,600원 증가하였고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등으로 인해 5,513,425,287원 감소하였습니다.

(마) 체육시설 : 서대문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잉여·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의 증가 등 18,591,351,260원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회관 신관 신축 등으로 인해 1,556,833,490원 감소하였습니다.

(바)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 서대문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장기),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확보, 신촌문화발전소건립공사 등 11,117,392,710원 증가하였고 서대문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확보, 창천경로당이전 등 14,118,332,790원 감소하였습니다.

(사) 기타비유동자산 : 가재울 5구역 및 모래내시장 경계부근 미조성 시설공사금 예치 등 1,099,157,704원 증가하였고, 남가좌1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등기완료 등 2,955,448,925원 감소하였습니다.

(아) 보증금 : 서대문구의회 임시청사 입주관련 보증금 증감액 중 당해연도말 135,000,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 그 외 : 상기 외 내역은 통합계정 및 부수계정등이므로 타계정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고, 금액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원, %)

과목	기타특별회계		
	증감률	기초잔액	기말잔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51.7893	832,480,396	2,096,096,352
단기대여금	36.9197	131,400,000	179,912,50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36.9197	-1,314,000	-1,799,125
기타유동자산	29.9812	19,367,567	25,174,188
투자자산	51.5081	470,200,500	712,391,625
장기대여금	51.5081	474,950,000	719,587,500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51.5081	-4,749,500	-7,195,875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6.8122	-114,053,244	-144,633,460
집기비품	35.9181	287,705,490	391,043,850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53.2210	-88,353,295	-135,375,759
기타비유동자산	-44.1048	58,637,741	32,775,704
무형자산	-44.1048	58,637,741	32,775,704

(가) 단기대여금 : 민간융자금 재분류 및 회수 등으로 인한 증감 중 대손상각비를 포함해 48,027,375원 감소하였습니다.

(나) 기타유동자산 : 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 산정으로 25,174,188원 증가하고 19,367,567원 감소하였습니다.

(다) 장기대여금 : 상·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로 437,940,000원 증가하였고 민간융자금 재분류로 193,302,500원 감소하였습니다.

(라) 집기비품 : 2017년 주차단속관련 CCTV 통합 구매 설치 사업으로 인해 103,338,360원 증가하였습니다.

(마) 무형자산 : 거주자우선주차 통합관리시스템 라이선스 구매로 인해 4,630,000원 증가하고 무형자산상각비로 30,492,037원 감소하였습니다.

(바) 그 외 : 상기 외 내역은 통합계정 및 부수계정 등이므로 타계정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고, 금액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기금회계

(단위 : 원, %)

과목	기금회계		
	증감률	기초잔액	기말잔액
유동자산	129.4528	16,915,011,759	38,811,966,561
현금및현금성자산	38.0121	5,274,515,130	7,279,466,960
단기금융상품	207.8403	9,538,532,428	29,363,446,744
미수세의수입금대손충당금	28.1593	-8,578,147	-10,993,691
기타유동자산	328.9555	5,915,143	25,373,333
집기비품	-58.2319	6,831,310	2,853,310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63.8735	-5,983,368	-2,161,583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20.4119	-4,293,521	-5,169,911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150.0001	-2,685,220	-6,713,052
특정순자산	108.4152	19,806,069,446	41,278,854,976

(가) 단기금융상품 : 각 기금별 예치금 예입으로 29,363,446,744원 증가하였고 각 기금 사업집행으로 인해 19,538,532,428원 감소하였습니다.

(나) 기타유동자산 : 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로 25,373,333원 증가하였고 기초재수정분개로 인해 5,915,143원 감소하였습니다.

(다) 그 외 : 상기 외 내역은 통합계정 및 부수계정 등이므로 타계정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고, 금액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재정운영표

(1) 일반회계

(단위 : 원, %)

과목	일반회계		
	증감률	직전연도 금액	당해연도 금액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29.49	2,047,703,662	1,443,712,430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60.55	4,261,403,622	6,842,034,360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55.49	9,158,507,888	14,240,899,870
기타자산수선유지비	-66.65	1,635,785,860	545,532,930
임차료	32.55	763,304,420	1,011,777,086
연구개발비	49.69	666,983,460	998,446,820
이자비용	-100.00	2,988,989	-
예술단운동부운영비	-53.20	50,169,640	23,476,530
기타운영비	156.32	974,659,640	2,498,267,743
정부간이전비용	-20.45	9,080,071,470	7,222,659,030
국가에대환부담금	136.06	153,448,120	362,233,000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27.39	7,940,906,960	5,765,678,870
민간장학금	-28.86	35,897,200	25,536,000
전출금비용	260.08	8,305,845,040	29,907,742,130
기타이전비용	22.70	3,453,583,940	4,237,862,220
자산처분손실	1210.09	997,085	13,062,785
자산손상차손	606.06	1,199,645	8,470,249
무형자산상각비	-23.48	232,378,843	177,816,123
기타비용	29.01	133,524,160	172,263,070
지방교부세수익	25.0159	9,998,603,000	12,499,843,140
기타수익	33.34	603,868,173	805,221,041
전입금수익	105,113.09	586,950	617,548,283
대손충당금환입	285.81	48,643,223	187,672,758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100.00	554,638,000	-
재정운영결과	-27.49	-43,164,469,982	-31,295,611,434

(가)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 서대문구의회 임시이전 임대청사 시설 공사 등 비용입니다.

(나)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 청년창업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 사회적 경제-마을공동체센터 설치공사, 2017년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등 비용입니다.

(다)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 2017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비용입니다.

(라) 기타자산수선유지비 : 201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017년 서대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등 비용입니다.

(마) 임차료 : 신촌상권화 관련 5개 공실점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등 비용입니다.

(바) 연구개발비 :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연희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 비용입니다.

(사) 기타운영비 : 소송사건 패소액,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배상금 지급 등 비용입니다.

(아) 그 외 : 상기 외 내역은 통합계정 및 부수계정 등이므로 타 계정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고, 금액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원, %)

과목	기타특별회계		
	증감률	직전연도 금액	당해연도 금액
홍보및광고비	-52.14	34,271,300	16,401,000
지급수수료	46.74	7,079,940	10,389,180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56.15	62,183,920	27,263,520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39.83	10,371,610	6,240,000
임차료	55.72	75,036,090	116,852,250
연구개발비	-100.00	70,325,000	-
행사비	-100.00	260,000	-
위탁대행사업비	58.81	58,220,000	92,460,000
전출금비용	20.04	1,097,997,790	1,318,140,400
자산처분손실	-100.00	1,246,032	-
자산손상차손	-100.00	4,292	-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43.44	68,008,586	97,557,716
기타비용	418.38	19,045,880	98,730,140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100.00	209,455,000	-
기타수익	114.23	1,684,500	3,608,790
기타수익	187.53	1,684,500	3,608,790

(가) 임차료 : 신촌역 동측 공영주차장 임대료 납부 등 비용입니다.

(나) 위탁대행사업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체결에 따른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지급 등 비용입니다.

(다) 기타비용 : 보조금반납차액 조정액입니다.

(라) 그 외 : 상기 외 내역은 통합계정 및 부수계정 등이므로 타계정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고, 금액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기금회계

(단위 : 원, %)

과목	기금회계		
	증감률	직전연도 금액	당해연도 금액
인건비	-100.00	12,598,420	-
복리후생비	-100.00	4,000,000	-
기타인건비	-100.00	8,598,420	-
운영비	88.54	667,243,840	1,258,045,070
도서구입및인쇄비	-34.11	3,846,950	2,534,600
소모품비	-52.50	13,728,830	6,521,460
홍보및광고비	-58.88	5,012,000	2,061,000
지급수수료	354.84	6,978,140	31,739,540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368.75	107,179,000	502,399,900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27.79	524,165,470	669,850,300
교육훈련비	-	-	400,000
제세공과금	-100.00	117,430	-
임차료	280.01	3,276,020	12,449,200
업무추진비	-	-	2,700,000
행사비	-	-	23,992,570
민간등이전비용	240.98	446,902,550	1,523,839,263
민간보조금	148.89	338,507,550	842,496,680
전출금비용	-	-	617,548,283
기타이전비용	-41.15	108,395,000	63,794,300
기타비용	40.16	21,721,803	30,445,826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55.21	339,812	152,215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24.77	4,447,676	5,549,329
대손상각비	46.09	16,934,315	24,739,782
비용총계	144.88	1,148,466,613	2,812,330,159
자재조달수익	-45.70	1,956,456,667	1,062,388,820
경상세외수익	34.53	357,147,800	480,455,670
입시세외수익	-63.61	1,599,308,867	581,933,150
시도비보조금수익	-72.22	90,000,000	25,000,000
기타수익	3,622.06	585,228,160	21,782,546,286
전입금수익	102.76	584,468,000	21,775,658,000
대손충당금환입	112.40	760,160	6,888,286
수익총계	501.78	4,048,243,627	24,361,511,896
재정운영결과	643.13	-2,899,777,014	-21,549,181,737

(가)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 바람산어린이공원 하부옹벽 정비공사 등 비용입니다.

(나)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 2017년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 등 비용입니다.

(다) 그 외 : 상기 외 내역은 통합계정 및 부수계정 등이므로 타계정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고, 금액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 내부거래

(단위 : 원, %)

과목	내부거래		
	증감률	기초잔액	기말잔액
민간등이전비용	3,727.54	-585,054,950	-22,393,206,283
전출금비용	3,727.54	-585,054,950	-22,393,206,283
비용총계	3,727.54	-585,054,950	-22,393,206,283
기타수익	3,727.54	-585,054,950	-22,393,206,283
기타수익	3,727.54	-585,054,950	-22,393,206,283
수익총계	3,727.54	-585,054,950	-22,393,206,283

당해연도 내부거래는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구의회청서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예치로 인한 변동액입니다.

2) 주요 과목 중 당기 변동내역이 큰 과목에 대한 분석적 검토

가) 재정상태표

(단위 :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기타비유동자산	2,380,434,689	4,270,522,987	-1,890,088,298	-44.26
기타비유동부채	9,768,911,272	13,037,145,354	-3,268,234,082	-25.07
특정순자산	41,278,854,976	19,806,069,446	21,472,785,530	108.42

(1) 기타비유동자산 : 기타비유동자산은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비유동자산(세목) 중 세입세출외장기보관환금은 직전연도에 북아현1-2구역 도로공사 이행 목적의 예치금 예입으로 인한 증가액이 크게 나타났으나, 당해연도는 가재울5 및 모래내시장 경계부근 미조성시설공사금 예치로 인한 증가액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해연도는 세입세출외환금 반환으로 인한 감소액이 커 전체적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2) 기타비유동부채 : 2017년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우발부채는 681,709,936원이고 기초금액 26,479,713원을 제외한 655,230,223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가재울5 및 모래내시장 경계부근 미조성시설공사금예치 등 증가액이 발생하였으나 남가좌1동주민센터 부지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로 인한 감소액이 1,705,455,000원 발생하여 직전연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3) 특정순자산 : 당해연도 신설된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예치금 등으로 인해 21,472,785,530원 증가되었습니다.

나) 재정운영표

(1) 일반회계

(단위 : 원, %)

과목	일반회계		
	증감률	기초잔액	기말잔액
정부간이전비용	-20.46	9,080,071,470	7,222,659,030
정부간이전수익	10.37	308,236,147,650	340,213,258,870
기타수익	33.34	603,868,173	805,221,041
재정운영결과	-27.50	-43,164,469,982	-31,295,611,434

정부간이전수익 및 정부간이전비용은 정책에 따라 결정되고 기타수익은 차이보정 및 보조금 반납차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원, %)

과목	기타특별회계		
	증감률	기초잔액	기말잔액
기타수익	114.24	1,684,500	3,608,790

기타특별회계의 기타수익은 보조금반납차액 등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3) 기금회계

(단위 : 원, %)

과목	기금회계		
	증감률	기초잔액	기말잔액
인건비	-100.00	12,598,420	-
운영비	88.54	667,243,840	1,258,045,070
민간등이전비용	240.98	446,902,550	1,523,839,263
기타비용	40.16	21,721,803	30,445,826
비용총계	144.88	1,148,466,613	2,812,330,159
자체소달수익	-45.70	1,956,456,667	1,062,388,820
기타수익	3,622.06	585,228,160	21,782,546,286
수익총계	501.78	4,048,243,627	24,361,511,896
재정운영결과	643.13	-2,899,777,014	-21,549,181,737

기금회계에서는 운영비와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로 인해 비용총계가 1,663,863,546원 증가하였고, 신설된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등에 의한 기금예치로 인해 수익총계가 20,313,268,269원 증가하였습니다.

(4) 내부거래

(단위 : 원, %)

과목	내부거래		
	증감률	기초잔액	기말잔액
비용총계	3,727.54	-585,054,950	-22,393,206,283
기타수익	3,727.54	-585,054,950	-22,393,206,283
수익총계	3,727.54	-585,054,950	-22,393,206,283

당해연도 기금회계의 내부거래는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예치로 인한 변동액입니다.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조정명세서 검사내용

(단위 : 천원)

구분	해당연도(2017년)				합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내부거래	
I. 2017 회계연도의 세출액	461,619,950	6,707,960	3,958,884	-22,393,206	449,893,588
II. 세출 조정사항	-36,479,216	99,226	-1,146,554	-	-37,526,544
1.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12,524,464	1,113,242	30,445	-	13,668,151
자산처분손실	13,062	-	4	-	13,066
자산손상차손	8,470	-	-	-	8,470
감가상각비	10,663,489	680,958	5,701	-	11,350,148
대손상각비	932,692	381,864	24,740	-	1,339,296
퇴직급여	79,256	50,419	-	-	129,675
기타자금유출이없는비용	827,493	-	-	-	827,493
발생주의기간비용조정사항	-	-	-	-	-
2. 자산취득으로인한자금유출액	-38,755,324	-951,197	-1,177,000	-	-40,883,521
판매용부동산취득	-579,882	-	-	-	-579,882
장·단기대여금대여	-2,109,811	-437,940	-1,177,000	-	-3,724,751
일반유형자산취득	-13,709,806	-143,186	-	-	-13,852,992
주민편의시설취득	-21,288,831	-365,440	-	-	-21,654,271
사회기반시설취득	-699,112	-	-	-	-699,112
기타자산취득으로인한자금유출	-367,881	-4,630	-	-	-372,511
3. 부채상환으로인한자금유출액	-10,248,356	-62,818	-	-	-10,311,174
차입부채상환	-	-	-	-	-
보조금집행잔액부채상환	-8,058,736	-46,037	-	-	-8,104,773
퇴직금지급	-2,144,624	-16,780	-	-	-2,161,404
기타부채상환으로인한자금유출	-44,997	-	-	-	-44,997
4. 순자산감소로인한자금유출액	-	-	-	-	-
자본잉여금반납	-	-	-	-	-
5. 기금예치로인한자금유출액	-	-	-	-	-
기금예치금의적립	-	-	-	-	-
III. 성질별계정운영표의비용(I+II)	425,140,733	6,807,186	2,812,330	-22,393,206	412,367,043

구분	해당연도(2017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내부거래	합계
IV. 2017 회계연도의 세입액	566,362,273	25,404,056	40,601,798	-22,393,206	609,974,921
V. 세입조정사항	-109,925,928	-15,203,275	-16,240,286	-	-141,369,489
1. 전년도순세계잉여금및이월금	-102,399,658	-15,032,480	-14,813,048	-	-132,245,186
2. 자금유입이없는수익	11,548,094	-13,033	19,734	-	11,554,795
정수결정액과수납액의차이	-115,450	-24,952	-6,613	-	-147,015
자산처분이익	11,506,413	-	-	-	11,506,413
대손충당금환입	187,673	-	6,888	-	194,561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	-	-	-
자산손상차손환입	-	-	-	-	-
기타자금유입이없는수익	-	3,608	-	-	3,608
발생주의기간수익조정사항	-30,541	8,310	19,458	-	-2,773
3. 자산처분으로인한자금유입액	-12,842,871	-144,790	-1,446,972	-	-14,434,633
재고자산판매	-6,516,498	-	-	-	-6,516,498
장·단기대여금의회수	-	-144,790	-1,446,972	-	-1,591,762
일반유형자산처분	-6,228,186	-	-	-	-6,228,186
기타자산처분으로인한자금유입	-98,186	-	-	-	-98,186
4. 부채증가로인한자금유입액	-6,231,494	-12,971	-	-	-6,244,465
차입부채증가	-	-	-	-	-
보조금집행잔액부채증가	-6,231,494	-12,971	-	-	-6,244,465
기타부채증가로인한자금유입	-	-	-	-	-
5. 순자산증가로인한자금유입액	-	-	-	-	-
자본잉여금수입	-	-	-	-	-
VI. 성질별재정운영표의수익(IV+V)	456,436,344	10,200,781	24,361,512	-22,393,206	468,605,431
VII 재정운영표의재정운영결과(III-IV)	-31,295,611	-3,393,595	-21,549,182	-	-56,238,388

위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조정명세서의 세부내역 및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산처분손실 : 회계기간 중 의료시설, 집기비품(전산장비 구매 등)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 (2) 자산손상차손 : 유형자산 취득 후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여 표시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 (3)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은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해 계산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표시하고 있으며, 취득 후 지속적인 유지보수 지출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취득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4) 대손상각비 : 대손상각비 설정은 행정자치부 「2017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용규정」에 따라 과거 3년간 평균 결손경험률을 기준으로 결손추정률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기말 대손상각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회계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산정금액
계		932,692,620
일반회계	미수주민세 대손설정	911,842
일반회계	미수재산세 대손설정	366,409,216
일반회계	미수등록면허세 대손설정	61,755,031
일반회계	미수재산임대료 대손설정	5,866,739
일반회계	미수사용료 대손설정	27,842,313
일반회계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대손설정	52,452
일반회계	미수과태료 대손설정	468,567,570
일반회계	단기민간융자금 대손설정	42,183
일반회계	장기민간융자금 대손설정	1,245,274

(나) 기타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산정금액
계		381,864,398
기타특별회계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대손설정	83,233
기타특별회계	단기민간융자금 대손설정	485,125
기타특별회계	장기민간융자금 대손설정	2,446,375
기타특별회계	미수과태료 대손설정	377,722,467
기타특별회계	미수과징금 대손설정	1,127,198

(다) 기금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산정금액
계		24,739,782
기금	미수과태료 대손설정	22,571,091
기금	미수이행강제금 대손설정	1,390,914
기금	단기민간융자금 대손설정	777,777

(5) 퇴직급여 : 각 회계별 퇴직금추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회계

(단위 : 원)

회계구분	구분	소속	인원	퇴직금전환금 및예치금	퇴직금추계액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의회사무국	1		81,807,097
일반회계	시간선택제임기제	교육지원과	2		25,192,122
일반회계	시간선택제임기제	홍보담당관	3		35,717,389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안전치수과	10	6,739,800	705,991,265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재무과	1	178,500	145,835,390
일반회계	시간선택제임기제	보건위생과	3		36,648,875
일반회계	시간선택제임기제	의약과	1		12,529,722
일반회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좌지소	2		25,018,436
일반회계	시간선택제임기제	의약과	9		59,073,941
일반회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좌지소	1		2,640,971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복지정책과	9	20,153,820	47,337,264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토목과	12	8,573,400	1,515,571,359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지원과	8	1,139,700	235,281,486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등	지역건강과	5	12,216,450	18,148,326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의약과	12	42,838,810	46,060,162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건설관리과	3	2,450,000	258,138,628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등	정책기획담당관	3	1,188,300	197,655,907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등	자연사박물관	7	-	77,918,834
일반회계	시간선택제임기제	세무2과	2	-	16,924,842
일반회계	시간선택제임기제	자치행정과	4	-	21,470,884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도시재정비과	1	-	82,010,201
일반회계	시간선택제임기제	환경과	1		7,371,855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등	일자리경제과	4	-	60,207,356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푸른도시과	1	-	132,388,075
일반회계	무기계약근로자	보건위생과	1	-	7,361,202
일반회계	시간선택제임기제	지역활성화과	5	-	36,646,004
일반회계	환경미화원	청소행정과	66	36,716,700	4,163,636,651
계			177	132,195,480	8,054,584,244

(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단위 : 원)

회계구분	구분	소속	인원	퇴직금전환금 및예치금	퇴직금추계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복지과	2	-	90,138,496

(다)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원)

회계구분	구분	소속	인원	퇴직금전환금 및예치금	퇴직금추계액
주차장 특별회계	무기계약근로자 등	교통관리과	14	-	154,578,970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대상은 2017.12.31. 기준 1년 이상 근속자 중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이며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그 중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50%씩 가산하였습니다.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된 금액은 2,167,770,180원 감소하고 133,506,227원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은 129,675,407원입니다.

상기 퇴직급여 추가설정 금액은 재정운영표상 금액과 일치하며, 일반회계의 퇴직금 추계액은 8,054,584,244원, 퇴직금전환금 예치금 132,195,480원 총 8,167,106,230원이 재정상태표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의원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반납액 3,830,820원이 확인됩니다.

(6) 기타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 일반회계의 기타비용 중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에 대한 내역은 전기오류 및 차이조정, 보조금반납차액 등 172,263,070원과 소송관련 우발부채 655,230,223원으로 확인됩니다.

(7) 발생주의기간비용조정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판매용부동산등취득 : 저장품 및 판매용물품 중 수정분개, 판매용 물품의 구입 및 처분을 반영한 기말 판매용부동산 등 취득액 579,882,530원으로 확인됩니다.

(9) 장·단기대여금대여 : 일반회계의 당기 대여금 증가액 27,630,000원, 당기 보증금 증가액 2,082,18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당기 대여금 증가액 437,940,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당기 대여금 증가액 1,177,000,000원으로 확인됩니다.

(10) 일반유형자산취득 : 토지, 건물 등 취득금액이며, 일반회계의 일반유형자산 취득금액 13,709,806,537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유형자산 취득금액 143,186,290원으로 확인됩니다.

(11) 주민편의시설취득 : 주차장, 공원 등 취득금액이며, 일반회계의 주민편의시설 취득금액 21,288,830,116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주민편의시설 취득금액 365,440,940원으로 확인됩니다.

(12) 사회기반시설취득 : 도로 등 취득금액이며, 일반회계의 사회기반시설 취득금액 699,112,950원으로 확인됩니다.

(13) 기타자산취득으로인한자금유출 : 무형자산 취득금액이며, 일반회계의 CCTV영상 관리시스템 가상화 서버 및 라이선스 구매 156,988,183원을 포함한 무형자산 취득금액 총 367,881,083원,

주차장특별회계의 거주자우선 통합관리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4,630,000원 으로 확인됩니다.

- (14) 차입부채상환 : 해당사항 없습니다.
- (15) 보조금집행잔액부채상환 : 직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액이며,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 반납액 8,058,736,080원, 주차장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반납액 46,037,500원으로 확인됩니다.
- (16) 퇴직금지급 : 일반회계의 퇴직금 지급액 2,083,749,190원, 퇴직금 전환금 및 예치금 지급액 60,874,070원, 주차장특별회계의 퇴직금 지급액 16,780,950원으로 확인됩니다.
- (17) 기타부채상환으로인한자금유출 : 재해복구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관련 금융리스료 당기 상환액 44,997,064원으로 확인됩니다.
- (18) 자본잉여금반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19) 기금예치금의 적립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0) 징수결정액과수납액의차이 : 세외수입 등 징수결정액 미수납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계구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합계
현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489,175	-	-	489,175
현년도세외수입미수납액	3,507,543	1,232,811	672,231	5,412,586
지방세 과년도수입 실제수납액	549,190	-	-	549,190
세외수입과년도수입실제수납액	3,331,947	943,546	-	4,275,494
과년도 지방세 가산금등 징수결정	264,088	-	-	264,088
과년도 세외수입 가산금등 징수결정	-	-	-	-
과년도 지방세 감액	-	-	-	-
과년도 세외수입 감액	495,119	314,217	678,843	1,488,180
계	-115,450	-24,952	-6,612	-147,015

- (21) 자산처분이익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을 처분하여 차익이 발생한 내역은 재고자산매각이익 5,916,449,262원,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812,507,490원,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161,738,500원, 사회기반 시설처분이익 2,615,718,200원으로 확인됩니다.
- (22) 대손충당금환입 : 기말 대손충당금 환입액이며, 일반회계의 일반 미수금,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미수변상금, 미수과징금, 미수기타 임시세외수익 대손환입액 187,672,758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미수 과징금 대손환입액 2,589,761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장기민간융자금 대손환입액 3,069,368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장·단기 민간융자금 대손환입액 1,229,157원으로 확인됩니다.
- (23)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4) 자산손상차손환입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5) 기타자금유입이 없는 수익 : 기타수익의 보조금반납차액 3,608,790원으로 확인됩니다.
- (26) 발생주의기간수익조정사항 : 미수수익 및 선수수익의 기초·기말 보정분개에 의한 금액이며, 일반회계의 -30,541,348원, 기타특별회계의 8,310,475원, 기금회계의 19,458,190원으로 확인됩니다.
- (27) 재고자산판매 : 수수료수입 중 판매용재고자산(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6,516,498,050원으로 확인됩니다.
- (28) 장·단기대여금회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실제수납액 144,790,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실제수납액 1,446,972,449원으로 확인됩니다.

- (29) 일반유형자산처분 : 당기 선수금 증가액을 포함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6,228,186,180원으로 확인됩니다.
- (30) 기타자산처분으로 인한 자금유입 : 불용품매각대 중 자산처분에 해당되는 금액 98,186,810원으로 확인됩니다.
- (31) 차입부채증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2) 보조금집행잔액부채증가 : 국고보조금 반납예정액 중 일반회계의 1,743,628,2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4,058,16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납예정액 중 일반회계의 4,487,865,870원,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의 4,058,170원, 주차장특별회계의 4,855,080원으로 확인됩니다.
- (33) 기타부채증가로 인한 자금유입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4) 자본잉여금수입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결산검사 총평

1) 검사결과

2017회계연도 서대문구의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일부계정에 대해 심도있게 검사하였으나 중요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의 경우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등 3개 기금)에 대한 예치로 인한 내부거래가 약 224억이 발생하였으며, 직전연도와 마찬가지로 미수세입금 등의 철저한 결손관리와 세원발굴을 통해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시비 보조금 등의 추경이 다소 늦어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은 개선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2)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

2017회계연도 말 서대문구의 재정상태 및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유동자산	207,202,886,368	180,068,134,800	27,134,751,568	15.07
투자자산	10,677,376,416	10,736,072,437	-58,696,021	-0.55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일반유형자산	195,422,272,786	184,912,550,040	10,509,722,746	5.68
주민편의시설	326,556,017,668	285,011,432,256	41,544,585,412	14.58
사회기반시설	1,042,036,019,998	1,074,752,580,152	32,716,560,154	-3.04
기타비유동자산	2,380,434,689	4,270,522,987	-1,890,088,298	-44.26
자산총계	1,784,275,007,925	1,739,751,292,672	44,523,715,253	2.56
유동부채	19,698,882,011	21,054,081,730	-1,355,199,719	-6.44
장기차입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9,768,911,272	13,037,145,354	-3,268,234,082	-25.07
부채총계	29,467,793,283	34,091,227,084	-4,623,433,801	-13.56
고순자산	1,565,415,333,102	1,545,931,385,111	19,483,947,991	1.26
특정순자산	41,278,854,976	19,806,069,446	21,472,785,530	108.42
일반순자산	148,113,026,564	139,922,611,031	8,190,415,533	5.85
순자산총계	1,754,807,214,642	1,705,660,065,588	49,147,149,054	2.88
부채및순자산총계	1,784,275,007,925	1,739,751,292,672	44,523,715,253	2.56

2017회계연도말 서대문구의 자산은 1,784,275백만원으로 직전연도의 1,739,751백만원 보다 44,523백만원(2.56%) 증가하였으며, 그 중 주민편의시설이 41,544백만원 증가하여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서대문구의 부채는 29,467백만원으로 직전연도의 34,091백만원 보다 4,623백만원(13.56%) 감소하였으며, 그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나) 재정운영

(1) 2017회계연도 말 서대문구의 기능별 재정운영 및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2017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사업순원가	295,381,850	188,282,281	107,099,569	-	107,099,569
관리운영비	-	-	130,920,974	-22,393,206	108,527,767
비배분비용	-	-	8,457,424	-	8,457,424
비배분수익	-	-	27,558,422	-	27,558,422
재정운영 순원가	-	-	218,919,545	-22,393,206	196,526,339
수익	-	-	275,157,933	-22,393,206	252,764,727
재정운영 결과	-	-	-56,238,387	-	-56,238,387
과목	2016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사업순원가	270,785,649	180,791,690	89,993,958	-	89,993,958
관리운영비	-	-	100,509,352	-585,054	99,924,297
비배분비용	-	-	8,797,683	-	8,797,683
비배분수익	-	-	19,210,417	-	19,210,417
재정운영 순원가	-	-	180,090,577	-585,054	179,505,522
수익	-	-	229,905,247	-585,054	229,320,192
재정운영 결과	-	-	-49,814,669	-	-49,814,669

(단위 : 원, %)

과목	2017년	2016년	전년대비증감	
	금액	금액	금액	비율
사업순원가	107,099,569,304	89,993,958,804	17,105,610,500	19.01
관리운영비	108,527,767,860	99,924,297,571	8,603,470,289	8.61
비배분비용	8,457,424,635	8,797,683,565	-340,258,930	-3.87
비배분수익	27,558,422,382	19,210,417,296	8,348,005,086	43.46
재정운영순원가	196,526,339,417	179,505,522,644	17,020,816,773	9.48
수익	252,764,727,380	229,320,192,358	23,444,535,022	10.22
재정운영결과	-56,238,387,963	-49,814,669,714	-6,423,718,249	12.90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56,238백만원으로 직전연도의 -49,814백만원 보다 6,423백만원 감소(이익의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배분수익이 27,558백만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8,348백만원(43.46%)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 : 원, %)

(2) 2017회계연도 말 서대문구의 성질별 재정운영 및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2017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계
인건비	108,493,836	2,693,617	-	-	111,187,453
운영비	78,549,125	1,161,753	1,258,045	-	80,968,924
정부간이전비용	7,222,659	175,493	-	-	7,398,152
민간등이전비용	219,085,134	1,614,769	1,523,839	-22,393,206	199,830,537
기타비용	11,789,978	1,161,552	30,445	-	12,981,976
비용총계	425,140,733	6,807,186	2,812,330	-22,393,206	412,367,043
자체조달수익	115,417,864	6,695,695	1,062,388	-	123,175,948
정부간이전수익	340,213,258	3,501,477	1,516,576	-	345,231,312
기타수익	805,221	3,608	21,782,546	-22,393,206	198,169,834
수익총계	456,436,344	10,200,781	24,361,511	-22,393,206	468,605,431
재정운영결과	-31,295,611	-3,393,594	-21,549,181	-	-56,238,387
과목	2016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계
인건비	99,281,013	2,657,716	12,598	-	101,951,327
운영비	66,269,977	1,170,792	667,243	-	68,108,014
정부간이전비용	9,080,071	163,767	-	-	9,243,838
민간등이전비용	186,419,132	1,368,305	446,902	-585,054	187,649,286
기타비용	11,454,443	1,078,998	21,721	-	12,555,163
비용총계	372,504,638	6,439,580	1,148,466	-585,054	379,507,630
자체조달수익	106,829,093	6,430,539	1,956,456	-	115,216,089
정부간이전수익	308,236,147	3,757,778	1,506,558	-	313,500,485
기타수익	603,868	1,684	585,228	-585,054	605,725
수익총계	415,669,108	10,190,002	4,048,243	-585,054	429,322,300
재정운영결과	-43,164,469	-3,750,422	-2,899,777	-	-49,814,669

과목	2017년	2016년	전년대비증감	
	금액	금액	금액	비율
인건비	111,187,453,817	101,951,327,811	9,236,126,006	9.06
운영비	80,968,924,289	68,108,014,695	12,860,909,594	18.88
정부간이전비용	7,398,152,030	9,243,838,880	-1,845,686,850	-19.97
민간등이전비용	199,830,537,100	187,649,286,090	12,181,251,010	6.49
기타비용	12,981,976,183	12,555,163,274	426,812,909	3.40
비용총계	412,367,043,419	379,507,630,750	32,859,412,669	8.66
자체조달수익	123,175,948,798	115,216,089,421	7,959,859,377	6.91
정부간이전수익	345,231,312,750	313,500,485,160	31,730,827,590	10.12
기타수익	198,169,834	605,725,883	-407,556,049	-67.28
수익총계	468,605,431,382	429,322,300,464	39,283,130,918	9.15
재정운영결과	-56,238,387,963	-49,814,669,714	6,423,718,249	12.90

2017회계연도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면 인건비 9,236백만원(9.06%) 증가, 운영비 12,860백만원(18.88%) 증가, 정부간이전비용 1,845백만원(19.97%) 감소, 민간등이전비용 12,181백만원(6.49%) 증가, 기타비용 426백만원(3.40%) 증가로 인해 비용총계 32,859백만원(8.66%) 증가하였으며, 자체조달수익 7,959백만원(6.91%) 증가, 정부간이전수익 31,730백만원(10.12%) 증가, 기타수익 407백만원(67.28%) 감소로 인해 수익총계 39,283백만원(9.15%) 증가하였으므로 재정운영결과는 6,423백만원(12.9%) 이익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해 건전한 재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순자산변동

2017회계연도 서대문구의 순자산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합계	합계	금액	비율
기초순자산	1,705,660,065,588	1,666,502,886,435	39,157,179,153	2.35
재정운영결과	-56,238,387,963	-49,814,669,714	-6,423,718,249	12.90
순자산의증가	25,154,517,544	1,305,826,111	23,848,691,433	1,826.33
순자산의감소	32,245,756,453	11,963,316,672	20,282,439,781	169.54
기말순자산	1,754,807,214,642	1,705,660,065,588	49,147,149,054	2.88

2017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직전연도 대비 49,147백만원(2.88%)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민편의시설의 증가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가 25,154백만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23,848백만원(1,826.33%)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 성과보고서

서대문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는 본 회계연도의 ‘사람중심의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1개)-정책사업목표(50)-단위사업(11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다음은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률	달성	달성률	미달성	달성률
계	11	50	111	9	8.11	72	64.86	30	27.03
정책기획담당관	1	2	5	0	0.00	4	80.00	1	20.00
감사담당관	1	1	3	0	0.00	1	33.33	2	66.67
홍보담당관	1	1	3	1	33.33	2	66.67	0	0.00
주민자치국	1	8	16	1	6.25	10	62.50	5	31.25
경제재정국	1	6	16	2	12.50	13	81.25	1	6.25
복지문화국	1	9	15	1	6.67	8	53.33	6	40.00
환경도시국	1	6	18	3	16.66	10	55.56	5	27.78
안전건설교통국	1	10	20	0	0.00	13	65.00	7	35.00
의회사무국	1	1	2	1	50.00	0	0.00	1	50.00
보건소	1	5	10	0	0.00	8	80.00	2	20.00
자연사박물관	1	1	3	0	0.00	3	100.00	0	0.00

서대문구의 정책사업 현황에 따른 성과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정책사업 111개 사업 중 초과달성 9개 사업(8.11%), 달성 72개 사업(64.86%), 미달성 30개 사업(27.03%)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와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비교현황입니다.

(단위 : 개, %)

실국명	2017년				2016년				달성률 증감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계	111	81	30	72.97	112	82	30	73.21	-0.24
정책기획담당관	5	4	1	80.00	5	4	1	80.0	0.00
감사담당관	3	1	2	33.33	3	0	3	0.00	33.33
홍보담당관	3	3	0	100.00	3	3	0	100.0	0.00
주민자치국	16	11	5	68.75	18	15	3	83.33	-14.58
경제재정국	16	15	1	93.75	16	16	0	100.00	-6.25
복지문화국	15	9	6	60.00	16	7	9	43.75	16.25
환경도시국	18	13	5	72.22	17	11	6	64.70	7.52
안전건설교통국	20	13	7	65.00	19	12	7	63.15	1.85
의회사무국	2	1	1	50.00	2	2	0	100.00	-50.00
보건소	10	8	2	80.00	10	9	1	90.00	-10.00
자연사박물관	3	3	0	100.00	3	3	0	100.00	0.00

서대문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1개 지표 중 9개가 초과달성(8.11%)하였고, 72개가 달성(64.86%)하였으며, 30개가 미달성(27.03%)하여 전체 목표 대비 달성률은 총 72.97%입니다. 이는 2016년도 달성률 73.21% 대비하여 0.24% 감소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과 자연사박물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감사담당관은 33.33%, 의회사무국은 50%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달성한 지표 중에는 청소행정과의 ‘생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2017년의 경우 목표 2% 대비하여 6.36% 달성하여 31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 목표대비 실적이 34%로 저조하여 목표량을 과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준수율’은 계획 9,430건 대비하여 24,960건의 실적을 달성하여 264%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도 계획량을 과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과계획 대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다 더 충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130% 이상인 7개 지표에 대한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하였는지를 재검토하여 2018년 성과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편, 달성률이 50%이하인 성과지표중에서 교통관리과의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사업용 차량 단속지도는 부과 10,506백만원에 대비 징수가 2,846백만원으로 2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제 징수실적에 가까운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건강과의 감염병 환자발생률에 대한 성과지표는 목표 120명, 실적 361명으로 측정산식에 의한 달성률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과지표 자체가 사전 통제가 어려운 감염병 환자 발생률이라는 지표를 설정하여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은 지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지표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 하던지, 측정산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의 구민1인당 대출권수에 대한 성과지표는 계획 2.9권, 실적 1.38권으로 48% 달성하여 2016년 대비(계획 2.9권, 실적 1.1권,달성률 38%) 10% 초과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측정산식(예, 전체 구민수를 최근 5년간 도서를 이용한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 함)을 개선하던지, 새로운 성과지표로 교체하던지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27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 및 지표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보완 바랍니다.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11,569,020	3,353,912	3,434,028	11,488,904
일반회계	6,602,224	170,582	191,773	6,581,033
특별회계	606,350	559,459	266,309	899,500
기금	4,360,446	2,623,871	2,975,946	4,008,371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488,903,75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증금채권 842,208,000원, 융자금채권 10,616,430,450원, 미수금채권 30,265,300원입니다.

(2) 채무

검사결과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1,263,313,181	79,766,602	43,236,584	1,299,843,199	
행정 재산	소계	1,228,249,989	79,080,520	37,984,339	1,269,346,170
	공용재산	215,035,383	35,570,509	2,863,198	247,742,694
	공공용재산	983,380,143	43,510,011	35,121,140	991,769,014
	기업용재산	29,834,462	0	0	29,834,462
	보존용재산	0	0	0	0
일반재산	35,063,192	686,082	5,252,245	30,497,029	

검사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직전연도말 현재액보다 36,530,018,001원 증가한 1,299,843,198,64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1,115	141	44	1,212
금액	7,721,816	1,481,268	814,660	8,388,424

검사결과 물품은 직전연도 보다 666,608,612원 증가한 8,388,424,318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Ⅲ.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 2017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연도	담당부서수	세외수입항목	부과액 (A)	징수액 (B)	징수율(% (B/A)	비고
합계	37	109	71,489	45,750	64.0	
현연도	37	109	45,936	42,418	92.3	
지난연도	(17)	(64)	25,533	3,332	13.0	

- 2017회계연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37개 부서에서 총 71,489백만원을 부과, 45,750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4.0%이며, 그 중 현연도 징수현황은 총 45,936백만원을 부과, 42,418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2.3%이고,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17개 부서에서 총 3,332백만원을 징수하여 그 징수율이 13.0%입니다.

(문제점)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에 의하면 세외수입 총액(52,659백만원 - 특별회계 포함)이 구 전체 세입총액(591,766백만원)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가 8.9%에 이르고 있어, 구 전체 세외수입 징수액이 세출예산 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위 2017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살펴보면, 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92.3%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나, 지난연도 징수실적은

13.0%에 불과하여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 과태료 외 7개 항목의 체납액 징수율과 건축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율이 각각 11.8%와 7.9%로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에서는 구 전체 자체 재원의 구성 비율 등을 감안하여 현연도는 물론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연도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세무2과 외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

2. 지방세 세입분야 과오납 발생 최소화

○ 세목별 과오납 발생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연도	합 계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199	753,148	57	393,494	283	20,954	74	228,990	785	109,710
2016	1,256	961,536	80	578,557	373	93,021	244	194,433	559	95,525
2015	1,176	721,217	113	408,743	597	79,737	284	187,432	182	45,305

○ 사유별 과오납 발생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연도	과오납총액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199	753,148	1,012	381,296	-	-	30	68,310	157	303,542
2016	1,256	961,536	134	69,440	33	57,806	24	137,003	1,065	697,287
2015	1,176	721,217	402	191,227	52	12,986	26	15,887	696	501,117

(위 기타사항은 면적 및 세율정정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재부과 사항임)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 분야 세목별 과오납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16회계연도에는 취득세 과오납 발생 총액이 578,55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7회계연도에는 자동차세 과오납 발생 총액이 228,990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오납 건수로 보면 2017년도와 2016년도에 면허세 부분에서 785건과 55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금액별 과오납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17년도와 2016년도의 과오납 발생 총액이 각각 753,148천원과 961,536천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별로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착오 부과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012건과 381,296천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불복 청구 건수는 2017년도에 3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지만, 경우에 따라 환부이자를 지급할 경우, 재정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지방세 분야 각종 세금을 부과할 시에 과세대상 토지나 건축물의 구조와 면적 등의 착오, 또는 세율 적용 오류, 기타 합산 과세 시에 용도별 면적 착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부득이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급적 과오납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세가 위법·부당하거나 착오 부과 시에 지방세 기본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여 과세금액 전액을 감액하거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행정상의 번거로움 등이 있고, 납세의무자(민원인)의 측면에서 보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조세 저항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 지방세 분야의 각종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적법하게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고, 만약 패소할 경우 과오납이 발생하여 환부이자까지 지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재정손실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 담당부서에서는 각종 지방세를 부과할 시에 과세대상 토지나

건축물 등 과세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검토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부터 지방세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된 만큼 지방세 과세 행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해당부서 : 세무1과, 세무2과, 세입담당 전 부서

3. 세외수입(법규위반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철저

○ 2017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세외수입항목	부과액 (A)	징수액 (B)	징수율(% (B/A)	당초 부과부서
합 계	7개 항목	30,441,418	3,593,749	11.8	
세 무 2 과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6,439,145	450,674	7.0	교통행정과
	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2,772,067	203,180	7.3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1,225,873	35,058	2.8	
	건축이행강제금	6,445,328	1,594,027	24.7	건축과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과징금	1,196,939	25,298	2.1	지 적 과
	구유재산변상금	701,676	75,259	10.7	재 무 과
푸른도시과	건축이행강제금	3,385,933	266,707	7.9	푸른도시과
교통관리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특별회계)	8,274,457	943,546	11.4	교통관리과

(현황 및 문제점)

○ 위 2017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일반 및 특별회계) 중에서 그 규모가 비교적 크면서 징수율이 저조한 항목들로서 3개 부서 7개 항목의 체납총액이 30,441,418천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 3,593,749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11.8%로 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13.0%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과 과태료 체납액은 6,439,145천원으로 다른 세외수입 항목보다 체납액도 크고, 그 징수율도 7.0%에 불과합니다.

- 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와 푸른도시과 건축이행강제금 그리고 교통관리과 주정차위반과태료(특별회계) 등의 체납액 역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15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 위 세외수입 항목의 체납액 총액과 징수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이는 각 해당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징수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입결산 현황에 의하면 세외수입 총액이 매년 구 전체 세입액 대비 재원별 구성비가 9%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구 전체 세외수입 징수액(체납징수액 포함)이 세출예산 편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외수입 재원의 중요성이 서울시 자치구가 거의 유사하겠지만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의 측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 징수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에서는 구 전체 세외수입 징수액이 구 전체 세입 총액과 세출예산편성에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징수 방법 등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는 보다 나은 징수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세무2과, 푸른도시과, 교통관리과 등 세외수입 담당 전 부서

4. 세출예산의 이월액 과다 발생 및 사업추진실적 부진

○ 연도별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32	44,276,313	66	25,440,397	66	18,835,916	지방재정법 제50조
2016		112	36,554,702	51	16,914,643	61	19,640,059	
2015		82	24,901,976	38	15,984,283	44	8,917,693	
2014		38	12,278,541	13	4,660,723	25	7,617,818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4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가 발생건수 및 금액면에서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과 2016년에는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전년도(2015, 2014)와 비교하여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예산이월의 대부분은 시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도 도시재생사업과 일자리지원사업,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등 몇 개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그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의 교부지연과 설계변경,

그리고 대상사업 물건의 매입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선행절차의 지연 등으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그러나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출예산을 이월하여야 할 경우, 이월사업비 확정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 확보된 예산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조기에 발주하고, 기타 주요정책 사업 등은 절대 공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선행절차의 지연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서에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권고합니다.

- 또한 해당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교부요청하고, 사업예산이 가급적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지역활성화과 외 21개 부서

5. 각종 입찰계약공사의 설계변경 과다

○ 2017회계연도 각종 입찰계약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최초계약		설계변경		증감액	비율(%)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20	42,971,724	112	43,021,339	49,615	50.91	0.11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
공 사		134	35,902,569	87	36,119,178	216,609	64.92	0.6	
용 역		72	5,981,209	23	5,847,410	-133,799	31.94	-2.23	
물 품		14	1,087,946	2	1,054,751	-33,195	14.28	-3.05	

- 증감비율은 최초계약에 대한 설계변경 건수 및 증감액에 대한 비율임

(현황 및 문제점)

○ 2017회계연도 각종 입찰계약 현황에 의하면 최초계약은 총 220건에 총 42,971,724천원이며, 그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수 및 금액은 총 112건에 43,021,339천원으로 그 차인금액도 49,615천원이며, 그 증감비율은 각각 50.91%(건수)와 0.11%(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 위 2017회계연도 공사분야 입찰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계약 당시에는 134건에 35,902,569천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에서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건수 및 금액은 총 87건에 36,119,178천원으로 그 차인금액도 216,609천원이나 발생하였으며, 그 증감비율은 각각 64.92%(건수)와 0.6%(금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공사분야에서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 공사 중에는 공사 1건당 설계변경

횟수도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설계변경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금액 증감은 물론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이어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계약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훼손할 만큼의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경우 공사를 새로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설계변경 공사의 대부분이 발주부서에서 이미 설계용역을 거쳐서 입찰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수 건의 과다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증감액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공사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해당부서 : 토목과, 안전치수과 등 설계변경이 있는 전 부서

60,825천원, 교육용품 및 기자재 등 물품구입비는 110,460천원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시설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

○ 2017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시설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어린이집명	예산현액	지출액	세부지출내역	비고
합계	600,000 (시비 570,000 구비 30,000)	600,000	공사비 196,981 물품구입 403,019	물품구입 : 교육 용품 및 기자재 등
○○어린이집	150,000 (시비 142,500 구비 7,500)	150,000	공사비 39,540 물품구입 110,460	
○○어린이집	150,000 (시비 142,500 구비 7,500)	150,000	공사비 41,330 물품구입 108,670	
○○어린이집	150,000 (시비 142,500 구비 7,500)	150,000	공사비 60,825 물품구입 89,175	
○○어린이집	150,000 (시비 142,500 구비 7,500)	150,000	공사비 55,286 물품구입 94,714	

○ 2017회계연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에 의하면 해당 부서에서 구립어린이집 전환신청을 한 4개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전적격 심사 등을 거쳐, 서울시로부터 전환승인 및 이에 필요한 예산(시비 570,000천원, 구비 30,000천원)을 지원받아 이들 4개 어린이집에 각각 150,000천원(시비 142,500천원, 구비 7,500천원)을 교부하여 어린이집원장으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비 등과 교육용품 및 기자재 등의 물품구입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 위 4개 어린이집에서는 서대문구로부터 각각 지원 받은 예산 총150,000천원을 주로 건축물인테리어 공사비와 CCTV설치비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 교육용품 및 기자재 등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후 해당부서에 정산보고하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각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원장의 주도아래 공사비는 최대

(문제점)

○ 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구립 어린이집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다음, 서울시로부터 구립어린이집 전환승인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은 후, 이들 어린이집원장에게 직접 교부한 다음 예산을 대행하여 집행토록 하고, 사후에 이를 정산 보고토록 하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 이는 전문성이 없는 어린이집원장에게 전환예산 전액(150,000천원)을 대행집행토록 하는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이 경우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구립어린이집 전환예산 총액(150,000천원)이 각각 금액기준으로 보나 구립어린이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에 대한 공사비나 일정금액 이상의 비품구입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들 어린이집원장들이 관련공사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수종에 이르는 교육용품 및 기자재 등이 제품의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 위 구립어린이집 전환예산은 자치구 재정충족도에 따라 서울시에서 총570,000천원(95%)을 지원해주고, 자치구에서 30,000천원(5%)을 지원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위 예산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한 각종 공사 등이 비록 소규모이고, 교육용 기자재 등이 수중에 달하여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립 어린이집 전환예산 전액(150,000천원)을 전문성이 없는 원장 개인에게 대행하여 집행토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이를 통합하여 직접 발주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민간대행사업 예산보다는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여성가족과, 정책기획담당관, 재무과

7. 법인시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철저

○ 2017 법인시공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부동산소재지	건축주	연면적(m ²)	시공사(법인)	부과세액	비고 (납부일자)
신촌동	학교법인○○○○○	11,789.19	(주)○○○○	75,276,940	2017.02.27
신촌동	학교법인○○○○○	29,669.81	(주)○○○○	188,889,900	2017.02.27
신촌동	학교법인○○○○○	165.56	(주)○○○○	9,159,770	2017.02.27
남가좌동	○○○○공사	463.13	○○○○(주) 외 4	24,905,460	2017.02.17
남가좌동	○○○○공사	2,104.17	○○○○(주) 외 4	75,437,110	2017.05.11
남가좌동	○○○○○○(주)	13,573.47	(주)○○○○○○	666,651,550	2017.02.23
연희동	○○○○○○(주)	2,054.37	(주)○○○○	79,026,990	2017.04.20
북가좌동	○○○○(주)	930.99	(주)○○○○○○	29,350,860	2017.06.07
연희동	(주)○○○○○○	307.12	(주)○○○○○○	12,872,410	2017.11.14
홍제3동	(주)○○○○○○	609.46	(주)○○○○	21,318,220	2017.11.17
홍제2동 외 8개동	김00 외 8명	23,614.76	(주)○○○○○○ 외 8개 법인	1,062,088,880	2017.03.28
합계	19명(건)			2,244,978,090	

○ 2017 법인에 대한 취득세 추징실적

(단위 : 원)

추징법인수	추징건수	추징세액	주요추징사유	비고
학교법인○○○○ 등 총 46개 법인	64	2,383,601,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감면 신청 후 추징 · 소규모 공동주택 감면 후 매각 · 법인의 과점주주 추징 	

(현황 및 문제점)

- 2017회계연도 서대문구에서 법인시공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기한 내 신고(납부)건수 및 금액은 학교법인 ○○○○○ 등 총 19건에 2,244,978,090원입니다.
- 한편 서대문구에서 2017. 2. 20. ~ 12. 31.까지 10개월동안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기획조사,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실적이 46개 법인 총 64건에 2,383,601,310원에 이릅니다.
- 위 취득세 주요 추징사유를 살펴보면, 취득세 신고납부 시, 감면신청을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이후, 감면신청 사실과 서로 다르거나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 사례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은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법인시공 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신고인)가 취득세를 납부키 위하여 해당 부서에 공사도급계약서, 감면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대부분 제출된 신고서상의 내용에 의해서만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출된 서류상의 진위여부와 구체적 사실 등은 확인키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즉 취득세 신고 당시, 위 주요 추징사유에서와 같이 지방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사항들이 사후에 감면신청 사실과 서로 다르거나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을 받은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꾸준히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고사항)

- 법인시공 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법인 등 신고인)가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신고서 내용(공사도급계약서, 지방세 감면 신청내용, 법인장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결정이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신고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신고사항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세무1과, 세무2과

8. 순세계잉여금 분석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구 분	예산현액 (A)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B)	비율 (B/A)
2017	계	566,139	123,438	48,378	6,244	68,816	12.2%
	일반회계	541,635	104,742	44,276	6,231	54,235	10.0%
	특별회계	24,504	18,696	4,102	13	14,581	59.5%
2016	계	493,444	117,432	38,177	8,012	71,243	14.4%
	일반회계	469,693	102,400	36,555	7,886	57,959	12.3%
	특별회계	23,751	15,032	1,622	126	13,284	55.9%
2015	계	423,033	75,871	24,826	3,800	45,245	10.7%
	일반회계	405,124	62,129	24,902	3,737	33,490	8.3%
	특별회계	17,909	13,742	1,924	63	11,755	65.6%
2014	계	371,151	49,208	13,078	3,652	32,478	8.8%
	일반회계	357,487	37,235	12,278	3,590	21,367	6.0%
	특별회계	13,664	11,973	800	62	11,111	81.3%

(현황 및 문제점)

○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예산의 집행잔액, 세출의 절감, 불용액, 초과세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현액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예산의 절감, 불용액, 초과세입보다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았으며, 특히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일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미집행사유
정책기획담당관	협치서대문 추진 (행사운영비)	53,500	31,400	58.7	사업일정 변경
	기본경비 (국내여비)	90,012	20,767	23.1	집행잔액
홍보담당관	기본경비 (국내여비)	44,460	13,030	29.3	집행잔액
행정지원과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보수)	2,402,435	292,115	12.2	사회복지 전담직원 휴직
	기본경비 (국내여비)	148,200	52,040	35.1	집행잔액
자치행정과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337,137	66,310	19.6	집행잔액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기타보상금)	42,680	17,270	40.4	마을활력소 운영비 절감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98,721	92,831	23.2	인원 감소
민원여권과	민원 안내서비스 (공공운영비)	142,465	39,356	27.6	우편물 감소
전산정보과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509,583	68,897	13.5	낙찰차액
교육지원과	학교 지원 (교육기관에대항보조)	6,037,844	547,332	9.1	급식지원 인원수 변동
	혁신교육지구운영 (기타보상금)	200,340	55,085	27.5	사업변경
	기본경비 (국내여비)	68,172	41,162	60.4	집행잔액

(개선 및 권고사항)

○ 세계잉여금 중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 적기 예산집행의 태만, 추경시 소극적인 감액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제외한 기타의 집행잔액은 필요한 사업의 예산집행 방해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정교한 예측기법 개발,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예산편성부서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당부서 : 전 부서, 정책기획담당관

9. 세입추계 분석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비율 (B/A)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비율 (B/A)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비율 (B/A)	
합계	86,841,511	98,379,464	113.3	97,613,783	113,180,765	115.9	106,757,184	117,262,448	109.8	
지방세	소계	58,194,752	63,963,984	109.9	63,841,461	66,519,743	104.2	67,693,721	71,512,147	105.6
	등록면허세	6,867,752	8,876,241	129.2	7,940,461	8,090,247	101.9	8,470,721	7,698,098	90.9
	주민세	-	1,020	-	-	-	-	-	-	-
	재산세	50,966,000	54,729,359	107.4	55,536,000	58,016,706	104.5	58,853,000	63,264,859	107.5
	과년도수입	361,000	357,364	99.0	365,000	412,790	113.1	370,000	549,190	148.4
세외수입	소계	28,646,759	34,415,480	120.1	33,772,322	46,661,022	138.2	39,063,463	45,750,301	117.1
	경상적세외수입	18,947,941	19,992,088	105.5	23,962,506	26,360,837	110.0	24,966,214	29,171,040	116.8
	임시적세외수입	6,697,646	9,526,953	142.2	6,582,640	12,442,551	189.0	10,836,852	13,247,313	122.2
	과년도수입	3,001,172	4,896,439	163.2	3,227,176	7,857,634	243.5	3,260,397	3,331,948	102.2

(현황 및 문제점)

○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및 과년도수입, 그리고 세외수입은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였으나, 등록면허세는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의 90.9%로 772,623천원의 세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세입손실이 아니어서 다행이나 만약 전체적인 세입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적자재정으로 인하여 예산운용의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추계는 세입이 발생할 수 있는 각 부서(각 과)와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정확한 자료의 수합과 각 부서간 긴밀한 협의와 정밀한 예측기법으로 세입추계를 하여야 하나, 각 부서(각 과)의 자료 및 예측의 잘못으로 세입추계의 부실로 인한 세입손실이 발생하여 적자재정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입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 해당부서 : 전 부서, 정책기획담당관, 세무1과, 세무2과

10.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행사성(축제) 보조금 현황 분석

○ 연도별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법인·단체명	보조금액		
			2015	2016	2017
총 계			449,790	749,840 (전년대비 66.7%증)	829,550 (전년대비 10.6%증)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설 명절 이벤트	영천, 인왕, 포방터시장	8,950	7,120	9,600
	전통시장 추석 명절 이벤트	영천, 인왕, 포방터시장, 유진상가	8,620	10,620	8,650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판매촉진 이벤트사업	영천, 인왕, 포방터시장	21,220		
	전통시장 다시찾기 판촉전	영천, 인왕, 포방터, 모내래·서중, 백련시장			77,800
지역활성화과	상권골목축제 주민공모	대학생각 외 3			16,000
사회복지과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외 1	20,000	19,000	19,000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외 1	20,000	19,000	19,000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당 행사	한국계가장기요양기관 정보협회 서대문지회		8,000	8,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종사자 한마음 행사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9,000	9,100	9,100
	보육이동 한마음행사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방과후교실연합회	11,000	11,000	11,000
	어린이날 행사보조	(사)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15,000	15,000	17,000
문화체육과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추진위원회	177,000	180,000	180,000
	홍제천 생명의 축제	홍제천생명의축제위원회	40,000	50,000	45,000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서대문청소년오케스트라 외 8개 단체	4,000	15,000	18,000

부서명	사업명	법인·단체명	보조금액		
			2015	2016	2017
문화체육과	홍을동네 행복축제	홍을축제위원회	20,000	5,000	10,000
	홍제문화예술축제	다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10,000	10,000
	신촌물총축제	무언가	5,000	250,000	220,000
	이팝꽃길 및 모래내 시장 음악회	이팝꽃길축제위원회 외1		15,000	
	굴레방나눔축제	굴레방나눔한마당축제위원회			8,000
	문화행사(홍제2동)	인왕골어울림한마당추진위원회			5,000
	신촌문화축제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			20,000
	사찰문화행사	백련사,봉원사,옥천암	60,000	35,000	34,500
	연등행사	옥천암	20,000	20,000	20,000
	산사음악회	백련사	10,000	46,000	44,200
환 경 과	환경영화제	재단법인 환경재단		25,000	19,700

(현황 및 문제점)

-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단체의 민간행사사업에 대하여 보조하는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66.7% 증가하였고, 2017년은 전년도에 비하여 10.6% 증가하였습니다.
-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근거하여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내에서 보조하는 것이나 행정안전부 지침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88쪽)에 의하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축제)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에 의거하여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에서는 사업목적과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세밀히 심사하고 또한 모든 행사와 축제에 대해 매년 철저히 사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하되, 소규모 연례반복적 행사·축제는 가능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여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행사 및 축제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종교단체에 대한 행사·축제의 보조금은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부서 : 문화체육과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담당 전 부서

11.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과다 발생

○ 2017회계연도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	잔액 발생사유
총 계	1,299,250	661,551	50.92	
도로개설사업지원 (시설부대비)	9,000	6,526	72.5	집행잔액
연희동 170-19-142-2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30,000	27,982	93.3	집행잔액
대현동 62-13번지 일대 보행로 개설 (시설비)	20,000	6,050	30.3	집행잔액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0,122	4,053	20.1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6,377	19,526	42.1	집행잔액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0	5,797	13.2	집행잔액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설부대비)	10,000	6,405	64.0	집행잔액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 (시설비)	60,000	17,584	29.3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관내 보도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210,000 (추경 10,000)	102,665	48.9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시설비)	163,500	53,956	33.0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제설기능 유지 (사무관리비)	31,250	10,348	33.1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제설기능 유지 (공공운영비)	30,000	18,517	61.7	집행잔액
제설기능 유지 (재료비)	421,591 (전년도이월액 151,591)	238,954	56.7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78,410 (추경 6,960)	18,188	23.2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창천동 50-3-50-18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25,000 (전년도이월액)	125,000	100.0	도로계획사업 미실시

(현황 및 문제점)

- 토목과 예산의 위 15개 통계목 중 집행잔액률이 20%를 초과한 통계목은 14개로 평균 집행잔액률은 50.92%입니다. 그 중 연희동 170-19 ~ 142-2 간 도로개설공사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률 93.3%,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률 42.1%,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시설비는 추경예산을 10,000천원까지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102,665천원으로 집행잔액률이 48.9%이며 창천동 50-3 ~ 50-18 간 도로개설공사는 구간 내 사유지의 토지소유자 사업철회요구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의 과다편성, 예산절감(유보액), 낙찰차액, 불용액 등으로 발생하나 사업계획 시부터 부대비용의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하고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자재의 철저한 파악과 또한 도로개설공사에 저축되는 사유지의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확실히 한 다음 예산편성 및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사업효과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도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당부서 : 토목과

12. 일부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보조금 수령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 고
2017	104,574,312	102,932,862	99,868,961	1,316,215	1,747,686	1.7%
2016	102,101,260	99,093,483	93,410,336	3,512,384	2,170,763	2.2%
2015	91,583,473	85,877,247	79,473,892	4,777,390	1,625,965	1.9%
2014	72,324,193	69,850,712	66,611,433	2,179,604	1,059,675	1.5%

○ 일부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수령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
사회복지과	자활근로, 지역자활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기타보상금)	343,529	249,735	93,794	27.3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02,928	63,713	39,215	38.1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195,215	4,107,128	88,087	2.1
	보조교사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21,203	96,079	25,124	20.7
지역건강과	난임부부지원(의료및구급비)	238,170	209,581	28,589	12.0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의료및구급비)	27,397	14,246	13,151	48.0
	국가예방접종실시(의료및구급비)	1,090,351	1,030,487	59,864	5.5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수령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설치보수(시설비)	59,000	34,978	24,022	40.7
지역활성화과	창조경제발전 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시설비)	1,135,000	723,314	411,686	36.3
	창조경제발전 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7,460	292,540	97.5

(현황 및 문제점)

- 국고보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총 302개 사업에 102,932,862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하여 집행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747,686천원으로 집행잔액률이 1.7%입니다. 그러나 위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서는 5.5%이상으로, 많게는 410,000천원에서 적게는 13,000천원까지 국가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국가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확보한 국비를 사업추진의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과다한 집행 잔액을 발생케하여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부서 : 지역활성화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지역건강과

13.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서대문구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세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으로 자치행정과의 경우 예산액 393,917,000원 대비하여 427,455,280원을 실제 수납하여 108.51% 달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경우 예산액 74,000,000원 대비하여 61,209,960원을 실제 수납하여 82.72% 달성하였습니다.
- 민원여권과에서는 구청, 전철역 및 대학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에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서류에 대하여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발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연도별 민원서류 발급현황

연도	증지수입(원)	합계(건)	민원창구 증명민원 발급건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		
				계	유료	면제
2017	488,665,240	1,412,457	865,505	546,952	47,877	499,075 (35.33%)
2016	512,770,650	1,480,546	934,350	546,196	40,075	506,121 (34.18%)
2015	507,136,930	1,415,810	861,383	554,427	35,279	519,148 (36.67%)

주) 면제발급건수의 ()은 민원서류 총 발급건수대비한 면제 발급건수의 비율을 의미함

- 서대문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서류에 대하여 무료로 발급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증명민원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507,136,930원으로 총 발급건수 1,415,810건이며, 이 중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수수료 면제건수는 519,148건으로 총 발급건수의 36.67%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증명민원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488,665,240원으로 총 발급건수 1,412,457건이며, 이 중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수수료 면제건수는 499,075건으로 총 발급건수의 35.33%에 달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무료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계층은 노인보다는 중장년층이나, 청년층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무인민원발급에 따르는 최소한 비용(K시의 경우 발급 1건당 200원 부담)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최소한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세무2과

14.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서대문구에서는 2017년도 34개과에서 구정사업을 위하여 381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18,323백만원, 총 집행금액은 약 16,538백만원으로 계약 대비 집행률은 90.25%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서대문구의 세출은 일반회계 461,620백만원, 특별회계 6,708백만원으로 총 468,328백만원입니다. 2017년 용역비 집행액이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3.58%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역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17회계연도 용역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주감독부서	용역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집행금액
총계	381건		18,323,055	16,537,953
정책기획담당관	2017년도 기록관 무인정비용역 외 7건	㈜에스원 외 7	115,669	115,669
감사담당관	2017년 서대문구 청렴골든벨 행사장비 임차용역 외 1건	C&C커뮤니케이션 외 1	2,820	2,820
홍보담당관	2017년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기획편집용역(11회) 외 6건	㈜이앤디컴 외 6	73,432	72,308
행정지원과	2017년 구청제4별관 청소방호용 CCTV유지보수용역 외 25건	㈜씨큐넷 외 25	1,154,636	1,007,376
자치행정과	2017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연간단기) 외 23건	㈜에니텍시스 외 23	218,968	218,968
민원여권과	2017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법정근무시간외) 외 1건	U-오션 외 1	27,288	27,288
전산정보과	2017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외 10건	에스엠티정보기술(주) 외 10	1,544,552	1,538,650
교육지원과	학교시스템과 서대문혁신교육지구사업 결합방안 연구용역 외 20건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외 20	202,866	202,626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PM용역 외 19건	선랩건축사사무소(주) 외 19	278,922	259,302
지역활성화과	신촌문화발전소 기본및실시설계 용역계약 외 37건	건축사사무소카튼홀 외 37	928,843	741,635
재무과	2017년 행정사무복합기 임차용역 2채(연간단기) 외 3건	㈜프린텍솔루션 외 3	98,255	98,113

주감독부서	용역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집행금액
세무2과	2017년 지방소득세등 수기납부분 전산입력연간단기계약 외 1건	주한누리 외 1	12,710	10,474
지적과	2017.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용역	영진문화사	19,881	19,881
복지정책과	행복1004콜 및 행복팩 복지방문지도 기능개선 유지보수용역 시행 외 7건	즐카뮤니케이션 외 7	31,920	31,920
사회복지과	장애인복합문화센터 공간조성 실내건축설계용역시행 외 2건	루에스티 외 2	112,487	70,580
어르신복지과	창천경로당 이전계획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시행 외 5건	종합건축사사무소도도 건축 외 5	83,524	83,524
여성가족과	주민유구조사 용역계약 외 12건	문화리서치피오 외 12	316,698	307,788
문화체육과	서대문다목적체육관 건립(중축)공사 건설페가말 처리용역 외 28건	하늘환경 외 28	926,892	828,867
주택과	2017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 용역시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19,745	19,745
도시관리과	연희로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시행 외 8건	동해엔지니어링주식회사 외 8	1,006,744	724,466
환경과	2017년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용역 외 4건	테마고속투어(주) 외 4	29,740	29,740
청소행정과	2017년 혼합재활용품 선별처리계약(현대자원) 외 14건	(주)현대자원 외 14	8,411,912	7,746,702
건설관리과	특정폐기물(현수막등) 위탁처리계약 외 4건	성림에너지 외 4	142,569	142,569
토목과	2016/2017 서대문구 제설용역 시행 외 20건	(주)천은개발(주) 외 20	558,639	502,324
안전치수과	증기포32길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외 18건	이수경 외 18	1,128,741	870,954
푸른도시과	3단계 창의놀이터 재조성사업 설계용역 외 29건	디오스조경(주) 외 29	416,932	419,489
교통행정과	제3차 서대문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6건	주식회사신진이엔시 외 6	170,681	160,066
교통관리과	2017년도 불법주정차 PDA단속시스템 유지보수용역계약 발주 외 4건	케이엔엘정보시스템 외 4	44,989	44,505
구의회사무과	2017년 의회청사 방역관리업무 위탁관리용역 외 8건	삼성종합관리 외 8	27,301	27,301
보건위생과	2017년 보건소청사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외 8건	신성엘리베이터(주) 외 8	56,661	55,161
지역건강과	2017년 입산부 기형아 검사용역계약(연간단기) 외 3건	의료법인녹십자의료재단 외 3	26,096	25,846
가좌보건지소	2017년 가좌보건지소 무인정비용역(연간단기) 외 1건	(주)에이디터캡스 외 1	2,436	2,436
의약과	2017년 진단용 X선 발생장치(DigitalDiagnost) 유지보수용역 외 2건	(주)필립스코리아 외 2	39,830	39,830
자연사박물관	2017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발원시스템 유지관리 외 11건	(주)스마트릭스 외 11	89,666	89,020

(권고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적합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서대문구에서 2017년도에 수행한 381건의 용역 중에서 일부 용역에 대하여는 구 직원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 굳이 용역예산 집행은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하기를 권고하며, 자체 분야별 전문 직원을 TFT로 구성하여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용역을 대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전 부서

15. 우수사례

(1) 2017회계연도 지방세 세원 발굴실적 평가결과

○ 2017 지방세 세무조사 개요 및 추징실적

- 조사기간 : 2017. 2. 20 ~ 12. 31
- 조사대상법인 : 총 1,548개 법인(영리법인 1,322, 비영리법인 226)
- 조사반 편성 : 법인조사팀장 외 4명
- 조사방법 : 기획조사(18건), 서면조사(34건), 현장조사(4건), 직접조사(8건)
- 조사결과 지방세 추징실적
 - 취득세 부과 : 총 64건 2,383,601천원(46개 법인)

- 위 현장조사는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며, 직접조사는 서면신고 불이행 법인이나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한 사항임

○ 지방세(취득세) 추징사유별 현황

(단위 : 원)

추징사유별	구 분	건 수	추징세액	비 고
합 계		64	2,383,601,310	
학교법인 감면신청 후 추징		4	1,033,176,120	
법인의 과점주주 추징		26	33,704,200	
소규모공동주택 감면 후 매각		18	580,681,310	
기타 지점 설치 등		16	736,039,680	

○ 2017회계연도 서대문구 지방세 세원 발굴 실적에 의하면 2017. 2. 20. ~ 12. 31.(10개월간) 조사대상법인 총 1,548개(영리법인 1,322 비영리법인 226)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와 서면조사,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6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2,383,601천원(64건)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 그 추정사유를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감면신청 후, 고유목적대로 직접 사용치 않아 추정한 세액(취득세)이 4건에 1,033,176,120원이고, 법인의 과점주주 추징이 26건에 33,704,200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감면 후 일괄매각으로 추정한 세액이 18건에 580,681,310원이며, 기타 지점 설치 등의 추징이 16건에 736,039,68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추징실적은 서대문구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서대문구는 법인이나 부동산 등 지방세 세원 발굴여건이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대단히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 것은 해당 부서의 담당직원들이 지방세 세원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시한 자치구별 지방세 세원 발굴실적 평가에서도 서대문구가 “6위”의 성적으로 재정보전금 47,470,000원과 시상금 470,000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 위의 모든 사항들은 해당 세입관련부서(세무1과)에서 국·과장을 중심으로 세원발굴 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팀장의 주도아래 법인 등의 세무조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해당 부서(세무1과)에서는 법인이나 부동산 등의 지방세 세원 발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도 더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세무1과 및 세입이 있는 전 부서

(우수사례)

(2) 입찰계약공사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감액 분석

○ 회계연도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최초계약		설계변경		증감액	비율(%)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34	35,902	87	36,119	217	64.93	0.60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
2016	113	22,953	81	24,119	1,166	71.68	5.08	
2015	98	28,534	68	29,810	1,276	69.39	4.47	
2014	80	22,029	65	24,146	2,117	81.25	9.61	

- 위 건수 및 금액의 비율(%)은 최초 계약건수 및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 건수 및 증감액의 비율임

○ 위 회계연도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감현황에 의하면 계약금액 증감액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었으나 2016회계연도까지는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 각종 입찰계약공사는 대부분이 사전에 설계용역 등을 거쳐서 발주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감사항이 거의 없어야 함에도, 회계연도가 지날수록 다소 감소는 하였으나, 크게 변동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 그러나 2017회계연도의 설계변경 건수 및 이에 따른 증감액을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설계변경 건수 및 계약금액 증감액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017회계연도 설계변경 건수 87건(64.93%)과 증감액 217백만원(0.60%)은 2014의 설계변경 건수 65건(81.25%)과 증감액 2,117백만원(9.61%)을 비교할 경우, 무려 10분의 1로 감소하였고, 그 차인금액도 19억원이나 감소하여 세출예산 집행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획기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차인금액(감소분) 19억원을 세출예산의 사업비로 편성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자치구 사업을 몇 개 더 추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이며, 한편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 증감액 감소사례는 해당 부서(재무과)에서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사유가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인지 등을 검토하여 관행적이고 임의적인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특히 계약부서에서 재정합의(회계심사)시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 규정(설계변경사유)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해당 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업무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입찰계약공사에 대한 재정합의시에 공사발주부서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합리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재무과